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부대입찰공사시 신규품목이 추가된 경우 설계 변경은?

Q 부대입찰로 계약된 기계설비공사의 기계실 및 일반배관의 파이프 지지용 지지철물 주 자재인 찬넬(CHANEL)과 잡철물제작설치 품목이 당초 도급내역에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경우 기존 계약업체로 계약변경을 이행해야 하는지 혹은 별도발주 가능여부

A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 등 설계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다면 기존의 수급사업자에게 내용과 비율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

2. 하도급비율이 100% 초과시 설계변경

Q ① 설계변경계약과 관련, 하도급계약단가가 도급단가를 초과하거나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도급대비 하도급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도급단가를 적용키로 특약을 정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②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날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날까지의 물가변동을 감안, 하도급계약금액을 정해 향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을 시 위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조정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여부

A ①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해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되나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해 주어야 적법하다.

3. 발주처의 내규로 품목수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Q 건설공사와 관련 발주처가 설계당시 내부규정에 따라 어느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

- ①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발주처가 내규에 따라 계상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
- ② 이 경우 원사업자가 동 품목의 소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아도 공정한지 여부

A 우선 하도급법 제16조는 설계변경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은 바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음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② 자체내규를 이유로 시공에 필요한 품목의 수량을 계상하지 아니한 발주처의 행위가 공정한지 여부는 신고될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심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개금의 조정

Q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시한 설계변경 후 추가금액을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하는 바 비율이라 함은 각비목별 비율을 뜻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지, 늘어난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또한 원도급업체 93.12% 하도급업체 81.33% 일때 설계변경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났을 경우 얼마에 계약하면 되는지요.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도 등의 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해야 한다. ☉